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3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김은영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관내 청년들이 달성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시책 등)
(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다. 청년센터 위탁운영 근거·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 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한”을 “관한 분야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u> <u>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u> <u>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u> <u>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 <u>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u>	<u>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u> <u>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u> <u>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u> <u>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u> <u>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u> <u>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u>

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신 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현행과 같음)

2. ----- 관한 분야별 -----
-

3. ~ 5. (생 략)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생 략)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3. ~ 5.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계발 및 인재 육성
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청년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
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
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시행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제1항에 따른 -----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
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
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
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
----- 지원사업-----.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생 략)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청년기본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

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9.12.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홍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